

# 우리나라 서해 중남부의 불법어업에 대한 연구

서만석·김일평<sup>†</sup>

(군산대학교·<sup>†</sup>해양경찰청)

## A Study on the Illegal Fishery at the Korean Central and Southern Coast of the Yellow Sea

Man-Seok SEO · Il-Pyeong KIM<sup>†</sup>

Kunsan National University, <sup>†</sup>The Maritime Police

(Received April 4, 2005 / Accepted April 28, 2005)

### Abstract

Realities of illegal fisheries in the central and southern coastal areas of the Yellow Sea were investigated. The study was based on the data released by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OMAF) and Korea Coast Guard (KCG) during 1992-2002 and on questionnaire responses. Analyses of KCG data showed that the number of enforcements by the agency gradually decreased during 1998-2001 but rose in 2002. Analyses of the MOMAF data, however, revealed that illegal fisheries gradually increased during 1992-1996, but sharply increased after 1997, and that such illegal activities became more common in the East Sea beginning in 2001. MOMAF data also showed that although illegal fisheries began to increase in the Yellow Sea after 1997 they tended to decrease in the southern sea after 1998, with a high rate of small-bull trawlers (40.9%) that were non-sanction fisheries (38.1%). Questionnaire responses showed that illegal fisheries were mainly motivated by poverty (27.4%) and largely occurred in coastal fisheries (78.0%). Analyses of questionnaire responses also suggested that illegal fishing activities can be reduced through tougher laws regulating fisheries.

*Key words* : Illegal fishery, Yellow sea, Coastal fisheries

### I. 서론

연근해 어업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신장이 둔화되어 최근에는 자원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은 각종 산업폐수의 유

입, 생활 오폐수, 축산 오폐수, 각종 기름유출 등으로 해양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과 같은 대단위 매립과 간척사업으로 인해 연안 환경의 변화와 해수온도 상승으로 기인한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산란장 및 서식환경이 파괴되어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63-469-1820, manseok@kunsan.ac.kr

\* 이 연구는 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 되었음.

토착어종의 이주 등으로 어족자원이 감소되고, 어장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이 1999), 따라서 어선의 증가 및 장비의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불법어업은 해마다 지능적으로 증가일로에 있고, 불법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은 만성적인 불법어업 행위로 인하여 불법에 대한 인식이 둔화되어 마치 불법이 주관적으로 합법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날이 갈수록 불법어업이 조직화, 흉폭화, 탈법화 되어가고 있어 어족자원의 고갈과 선박의 고립성을 이용한 무법상태를 초래하여 수산업계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불법어업에 대한 연구는 수산청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단속에 관한 연구(이, 1996), 한국 연근해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실태에 관한 연구(이·김, 1998), 우리나라 연근해 불법어업의 유형별 발생 원인과 어업질서 확립에 관한 연구(최·정·차, 2002) 등이 있었으나, 우리나라 서해 중·남부에서 일어나는 불법어업의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보고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해 중·남부에 속하는 전·남북 및 충남 일원의 불법어업에 대한 현실과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불법어업의 현실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 II. 불법 어업의 배경 및 실태

### 1. 불법어업의 정의

불법어업은 1990년 8월 1일(법률 제4252호) 개정된 수산업법에서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부적법 또는 위법하게 행하는 어업 즉, 적법요건을 결여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어업을 말한다. 부적법 또는 위법한 어업이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및 선박안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의미의 수산업법을 말

한다(수산업법 52조).

실질적 의미의 수산업법인 낚시어선법,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어업자원보호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어항법, 어선법, 공유수면매립법,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해양오염 방지법, 개항질서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등의 법령 중 수산업에 관하여 규율하는 내용에 저촉되거나 하위 법령인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 보호령, 선박안전조업규칙,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육성수면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칙, 공동낚시터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규칙 등 대통령령과 부령, 해양수산부 고시 등을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을 말한다.

### 2. 불법어업의 유형

불법어업의 유형은 어업의 금지구역, 금지기간 및 금지대상을 행하는 어로행위, 법적 최소 크기에 미달하는 망목으로 된 어구에 의한 어로행위, 어업허가가 전혀 없는 선박에 의한 어로행위,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내용대로 조업하지 않고 다른 조업방법을 행하는 경우등을 말한다(수산업법 제 78조 및 79조).

## III. 조사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방법은 해양경찰 및 해양수산부의 자료를 근거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불법어업 단속실적을 근거로하여 불법어업의 실태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어업인들이 수산업법, 수산행정에 대한 인식정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사실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군산을 중심으로 서천, 김제, 부안, 고창, 목포지역 어업인들에게 설문지 결과를 각 항목별로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인 어업인들의 사고방식과 수산업 정책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였다.

<표 1> 해역별 특별법 위반 발생건수

단위:건수

년 도	권역별					
	전체	본청	동해	남해	서해	서해 중·남부
1998	32,365	299 (0.9)	2,447 (7.6)	19,775 (61.1)	9,844 (30.4)	6,957 (21.5)
1999	28,959	317 (1.1)	3,126 (10.8)	13,867 (47.9)	11,649 (40.2)	7,990 (27.6)
2000	25,467	370 (1.5)	13,867 (12.0)	12,036 (47.3)	9,996 (39.3)	7,068 (27.8)
2001	25,874	16 (0.1)	11,649 (14.7)	12,669 (48.9)	9,398 (36.3)	6,634 (25.6)
2002	26,747	703 (2.61)	7,990 (16.3)	12,451 (46.6)	9,196 (34.4)	7,608 (28.4)
평 균	16,502	341 (1.3)	7,816 (12.2)	14,159 (50.3)	10,017 (36.2)	7,251 (26.1)

( )는 전체에 대한 비율을 나타냄.

또한, 해상에서 범 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에 근무 중인 해양경찰관들 중에서 서해 중·남부의 어업의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군산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에 재직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결과를 분석하여 고찰하였다.

#### IV. 결과 및 고찰

##### 1. 해양경찰청 통계

해역별 불법어업의 위반 발생건수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본청은 1998년 0.9%, 1999년 1.1%, 2000년 1.5% 2001년 0.1%, 2002년 2.61%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001년을 제외한 모든 년도에서 점차 증가하였다.

동해권은 매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평균 12.2%), 남해권은 가장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으나(평균 50.3%), 1998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서해권은 30.4~40.2%(평균 36.1%)이내의 점유를 하고 있고, 서해 중·남부는 2001년을 제외하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평균 26.1%).

##### 2. 해양수산부 통계

해양수산부의 자료(해양수산부 어업지도과)는 1992년부터 2002년까지(11년간) 불법어업의 발생건수는 <표 2>와 같다.

해역별 통계를 보면 전해역 모두 1992~1996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1997년부터는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동해는 2001년부터 증가를 보였고, 남해는 1998년의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서해는 1997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였고, 특히 본 조사해역인 서해 중·남부해역을 1998년부터 뚜렷한 증가를 보였다.

단속 지역별 불법어업의 발생건수는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발생건수를 보면 1996~1999년까지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으나, 2000~2001년에는 감소를 보이다가 2002년에는 증가를 보였다.

해역별로 보면 전남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39.3%), 경남(17.4%), 충남(9.9%), 부산(9.6%), 전북(7.9%), 제주(4.4%), 경북(3.5%), 강원(3.3%), 경기(2.5%), 인천(1.5%), 울산(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대상 해역인 전북은 2000~200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전체건수의 7.9%를 차지하였고, 충남은 전북과는 대조적

<표 2> 해역별 불법어업의 발생 건수

단위:건수

년도	권역별				
	전 체	동 해	남 해	서 해	서 해 중·남부
1992	5,386	510	2,945	1,931	1,225
1993	5,557	641	2,793	2,115	1,452
1994	5,755	831	3,143	1,781	1,266
1995	6,706	900	3,556	2,250	1,716
1996	7,015	860	3,854	2,299	1,782
1997	24,580	4,763	13,639	6,178	5,057
1998	36,335	2,905	22,153	10,906	7,807
1999	34,716	3,647	16,850	12,659	8,785
2000	30,588	3,746	14,341	12,092	8,958
2001	31,587	4,398	14,660	12,237	9,210
2002	32,268	5,056	13,937	12,400	9,255
평균	20,044	2,568	10,170	6,987	5,138
%		12.8	50.7	34.9	25.6

<표 3> 단속 기관별 불법어업의 건수

단위 : 건수

지역	년도								합 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부 산	203	151	197	164	145	194	201	1,255	9.6	
인 천	22	56	26	14	12	25	44	199	1.5	
울 산	-	15	27	15	18	7	3	85	0.7	
경 기	21	40	43	50	59	44	70	327	2.5	
강 원	49	28	161	34	86	29	39	426	3.3	
충 남	252	266	178	188	179	162	73	1,298	9.9	
전 북	83	152	166	171	139	159	168	1,038	7.9	
전 남	719	750	711	842	555	653	920	5,150	39.3	
경 북	89	78	83	63	45	67	32	457	3.5	
경 남	400	445	278	232	245	287	397	2,284	17.4	
제 주	119	108	68	64	64	95	54	572	4.4	
합 계	1,957	2,089	1,938	1,837	1,547	1,722	2,001	13,091	100	
평균	177.9	189.9	176.2	167	140.6	156.5	181.9			

으로 해마다 불법어업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전체건수의 9.9%를 차지하였다.

실제 해상에서 도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전북측 어선이 전남해역이나 충남해역으로 또 충남측 어선이 전북측 해역으로, 전남측 어선이 전북측으로 빈번히 넘나들며 조업을 하기 때문에, 각 도의 단속 실적만으로는 관찰도의 불법어업이 증감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전남의 자료는 목포 뿐 아니라 남해안에 속하는 여수지방도 포함하고 있어 정확한 자료로 이용할 수 없

으므로, 여기에서는 이용하지 않고 전북과 충남의 통계만을 사용하였다.

전북과 충남의 실적을 합한 결과를 보면 평균 17.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해 중·남부의 업종별 불법어업의 단속 실적은 <표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소형기선저인망어업(40.9%)이 가장 많은 단속 실적을 보였고, 기선형망어업(3.1%), 중형기선저인망어업(2.2%), 대형기선저인망어업(1.8), 잠수기어업(1.5), 기타어업(5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어업

<표 4> 불법어업 업종별 단속 실적

단위 : 건수

연도별 \ 어업구분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	중형기선 저인망 어업	대형기선 저인망 어업	기선형망	잠수기	기타	합계
1996	1,467	107	87	154	64	1,249	3,128
1997	1,464	95	82	143	62	1,597	3,443
1998	1,396	59	52	95	70	1,481	3,153
1999	1,408	91	38	72	33	1,635	3,277
2000	1,179	45	43	78	40	1,776	3,161
2001	1,047	57	63	105	39	1,980	3,291
2002	1,258	31	39	61	23	1,690	3,102
합계	9,219	485	404	708	331	11,408	22,555
평균	1,317	69.2	57.7	101.1	47.3	1,629.7	
%	40.9	2.2	1.8	3.1	1.5	50.5	100

<표 5> 불법어업 유형별 단속 실적

단위 : 건수

	무허가	조업구역 위반	허가사항 위반	어구위반	기타	합계
1996	1,429	92	85	1,119	403	3,128
1997	1,395	57	257	1,269	465	3,443
1998	1,209	98	121	1,318	411	3,157
1999	1,408	221	69	1,269	463	3,430
2000	1,429	75	207	809	641	3,161
2001	904	168	185	1,133	901	3,291
2002	875	82	272	1,005	868	3,102
합계	8,649	793	1,196	7,922	4,152	22,712
%	38.1	3.5	5.3	34.9	18.2	100
평균	1,235.6	113.3	170.9	1,131.71	593.1	

(조망어업, 연안개량망어업, 낭장망어업, 연안조망어업, 형망어업, 통발어업, 삼중망어업, 뜰망어업)은 여러 가지 어업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가장 많은 불법어업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해 중·남부의 유형별 불법어업 단속 실적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무허가(38.1%)가 가장 많은 단속 실적을 보였고, 어구위반(34.9%), 허가사항 위반(5.3%), 조업구역 위반(3.5%), 기타(18.2%)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해 중·남부해역에서 단속되는 불법어업 행위는 년 평균 우리나라 전체의 17.8%를 차지하였다. 가장 많은 업종은 소형기선저인망어업(40.9%), 불법어업의 유형에 있어서는 무허가 어

업행위(38.1%)와 어구위반(34.9%)으로 두드러지게 많았음을 알 수 있다.

### 3. 어업인의 설문조사 결과

#### 가. 어업인이 실제 조업하는 업종

조사대상 어업인의 실제로 조업하는 업종은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안개량안강망을 포함한 안강망어업이 123척(30.4%)로 가장 많았고, 유자망 어업이 61척(15.1%), 해태양식 38척(9.4%), 낭장망 및 채낚기어업이 각각 3.7척(9.1%), 연승 23척(5.7%), 불법어업이 성행되고 있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21척(5.2%), 조망어업 13척(3.2%), 소호어업 12척(3%), 복합어업 11척(2.7%), 삼중자망어업 6척(1.5%), 운반어업이

5척(1.2%), 기타(형망, 해선망, 삼각망) 등으로 나타났다.

<표 6> 조사대상 어업인이 실제로 조업하는 업종

업종	수량 (척)	비율 (%)
안강망(연안개량 포함)	123	30.4
유자망(연안, 근해 포함)	61	15.1
채낚기	37	9.1
연승(연안, 근해 포함)	23	5.7
해태양식	38	9.4
삼중자망	6	1.5
소형기선저인망	21	5.2
형망	4	1.0
복합어업	11	2.7
소호	12	3.0
조망	13	3.2
운반업	5	1.2
해선망	2	0.5
삼각망	3	0.7
낭장망	37	9.1
통발(연안 및 근해)	9	2.2

나. 조사대상 어업인의 조업구역

총 응답자 414명 중 어업인의 조업구역은 전북, 충남 일원해역 173명(41.8%), 어청도해역 64명(15.5%), 동중국해역 45명(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 불법조업을 하는 이유

불법어업을 하게된 동기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229명(27.4%)로 가장 많았고, 허가대로 어업을 할 경우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기 때문에 184명(22.0%)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허가가 현실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산업에 관련된 법적제도나 장치의 수정 또는 보완에 대한 설문에는 348명이 응답했는데, 그렇다 255명(73.3%)이었으며, 아니다 93명(26.7%)으로 나타났다.

수산관계 법령의 정비나 제도의 수정이나 보완이 되어도 부정어업을 계속할 의향이 있는냐에 대한 설문에는 418명 중 계속

하겠다 126명(30.1%), 않는다 292명(69.9%)으로 나타나 제도가 정비되면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볼 때 법령의 정비가 현실에 부합되게 수정 보완이 요구된다.

불법어업을 계속하려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120명이 응답했는데,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60명(50%), 관계당국의 무관심으로 비현실적인 지도의 연속이므로 계속하겠다 21명(17.5%),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 18명(15%), 법을 바꿔도 어구가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다 12명(10%), 어족자원이 부족하므로 9명(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불법어업을 계속하려는 이유

이유	응답수 (명)	비율 (%)
생계유지를 위하여(어업인편의를 고려치 않는다)	60	50
관계당국의 무관심으로 비현실적인 지도의 연속 이므로 계속하겠다	21	17.5
정부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18	15
어족자원이 부족하므로	9	7.5
법을 바꿔도 어구가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다	12	10
합계	120	100

라. 수산업 발전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나에 대한 설문에는 109명이 응답했는데,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실에 맞는 수산정책이 26명(23.9%)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어업 단속과 기르는 어업지원 및 적절한 교육이 각각 21명(19.3%), 새로운 어업개발 20명(18.3%),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5명(4.6%), 지역 현실에 맞는 허가 발급 4명(3.7%), 기타 중국어선 단속(2.8%), 어장확대(1.8%), 직접 실험후 정책 수립 (1.8%), 남획금지(1.8%), 허가를 시대에 맞게 해줘야 한다(0.9%), 철저한 지도계몽(0.9%) 등의 순으로

<표 8> 수산업발전과 불법어업근절에 가장 필요한 것

의견 내용	응답 수 (명)	비율 (%)
불법단속	21	19.3
중국어선 단속	3	2.8
어장확대	2	1.8
직접 실험 후 정책수립	2	1.8
정부의 지원	5	4.6
적정허가 제한수를 정하자	1	0.9
현실에 맞는 정책수립	26	23.9
지역·현실에 맞는 허가 발급 요망	4	3.7
허가를 시대에 맞게 해줘라	1	0.9
철저한 지도계몽	1	0.9
기르는 어업 지원·교육 필요	21	19.3
새로운 어법개발	20	18.3
남획 금지	2	1.8
합 계	109	100

나타났다. 어업인들 스스로의 생각으로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적이고 현실성 있는 수산정책을 추진하면서 강력한 법집행으로 불법어업을 단속해야만 점차적으로 감소내지는 근절되어 향후 연근해 수산자원이 육성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에 맞는 수산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업인들이 바라는 가장 큰 바램이고 정부의 지원(교육 포함)과 불법 단속, 새로운 대체 어법개발의 순으로 나타났다.

#### 4. 해양경찰관 설문

태안, 군산, 목포 지역에 근무하는 해양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대표적인 불법어업의 종류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441명이 응답했는데,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형기선저인망어업 122명(27.7%)으

로 가장 많았고, 연안 개량 안강망 69명(15.6%),

조망 36명(8.2%), 패류조망 36명(8.2%), 낭장망 어업 30명(6.8%), 통발어업 25명(5.7%), 유자망 어업 24명(5.4%), 삼중자망 및 연승이 각각 19명(4.3%), 잠수기어업 18명(4.1%), 닛자망 및 해선어업이 각각 16명(3.6%), 정치망어업 7명(1.6%), 기타(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 불법어업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284명이 응답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생계형) 237명(83.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필요한 어업허가를 받지 못해서 29명(10.2%), 부를 축척하기 위해서(기업형) 9명(3.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불법 어업 종별 조사 결과

어업 종별	응답수(명)	비율(%)
트로울(게다방)	122	27.7
조망(새우방)	36	8.2
패류 조망(소라방)	36	8.2
연안 개량 안강망(뽕뽕이)	69	15.6
낭장망	30	6.8
닛 자망(돼지그물)	16	3.6
유자망	24	5.4
삼중자망(삼마이 그물)	19	4.3
통 발	25	5.7
잠수기어업	18	4.1
연 승	19	4.3
해선망, 안경망(명텅구리)	16	3.6
정치망(삼각망포함)	7	1.6
기타어업	4	0.9
합 계	441	100

다. 불법어업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341명이 응답했는데,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족자원고갈 235명(68.9%)으로 가장 많았고, 해양환경 파괴 62명(18.2%), 단속 공무원 채용증가 20명(5.9%), 공권력 파괴 및 어업인 소득증대가 각각 11명(3.2%), 지도선 증설 등 국고낭비 2명(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불법어업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한 인식 정도

불법어업이 가져오는 영향	응답수 (명)	비율 (%)
어족 자원 고갈	235	68.9
해양 환경 파괴	62	18.2
공권력 파괴	11	3.2
어업인 소득 증대	11	3.2
단속 공무원 채용 증가	20	5.9
지도선 증설 등 국고 낭비	2	0.6
아무런 영향 없다	0	0.0
합 계	341	100

라.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314명이 응답했는데,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15명(68.5%)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 30명(9.6%), 보상을 해야한다와 인신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각각 27명(8.6%), 현행되

<표 12> 수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 조사 결과

의견	응답 수(명)	비율(%)
일년생 어패류포획은 합법화를 시켜주자	7	2.3
법과 제도의 현실적인 보완	23	7.7
친환경적인 어법·양식업 개발	20	6.7
전업유도 융자금 장기 지원	4	1.3
수중에 많은 어초 투하	1	0.3
연근해 조업선 단속 조업구역선 설정	2	0.6
어업인의 의견을 직접수렴하여 실험을 통한 적극적인 방안 검토	15	5.0
사고의 전환	2	0.6
면허·허가·신고 조건 완화	18	6.0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강화	22	7.4
수산행정이 현장위주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져야된다	32	10.7
불법을 하지않아도 되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3	1.1
수산행정 담당부서와 어업인이 호흡을 같이 할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3	1.1
양성화 시켜주고 금어기를 길게 조정하자	32	10.7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19	6.4
추진력을 갖고 해야된다	1	0.3
어업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17	5.8
양성화에 대한 노력 강구	16	5.5
산란기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한다	27	9.1
무등록선이나 무허가선에 대해서도 구조를 해줘야된다	29	9.7
전반적인 어법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5	1.7
합 계	298	100

<표 11>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의견 조사결과

내 용	응답수 (명)	비율(%)
현행대로 하면 된다	12	3.8
보상을 해야 한다	27	8.6
법과제도를 개선해야한다	215	68.4
교육을 시켜야 된다	30	9.6
인신 구속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27	8.6
모르겠다	3	1.0
합 계	314	100

로 하면 된다 12명(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 단속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해양경찰관들의 부정어업을 방지하고 수산업을 발전시키며 해양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의견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는 298명의 응답자가 응답했는데,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산행정이 현장 위주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된다와 양성화시켜



주고 금어기를 길게 조정하자(10.7%), 무등록선이나 무허가선에 대해서도 구조를 해 줘야 된다(9.7%), 산란기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9.1%), 법과 제도의 현실적인 보완(7.7%),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 강화(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관들의 의견들은 각기 표현하는 부분은 달라도 전반적으로 같은 견해로 볼 수 있는 것은 제도 개선이었고, 현실에 맞는 행정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교육이나 조정을 통해 구제를 해야 하고, 단속역시 강화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들이었다.

이상과 같이 해양경찰, 해양수산부의 자료의 결과와 어업인의 설문 및 해양경찰관의 설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면서 연안 어족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1. 어업인들의 준법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2. 어업인들이 어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법이나 기타 제도를 개선을 하여야 한다.
3. 과감한 불법어업에 대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4. 총체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어업인과 학계, 행정관청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지 말고 같이 합심하여 서로 참여하여 현실에 맞는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있는 법 개정과 제도를 만들어 실무 행정, 현장행정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수산업의 발전과 자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V. 요약

우리나라 서해 중·남부 연근해의 불법어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청의 불법어업 단속 건수는 1998~2001년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2년에는 증가한 것으로 보여 주고 있

다.

2. 해양수산부 자료에서 1992~1996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1997년부터는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고, 동해는 2001년부터 증가를 보였다. 남해는 1998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서해는 1997년부터 증가하였다. 특히 서해 중·남부 해역은 1998년부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3. 서해 중·남부의 업종별 불법어업은 소형기선저인망어업(40.9%), 유형별은 무허가어업(38.1%)이 가장 많았다.
4.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을 하게 된 동기는 생계를 위한 것이 27.4%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수산정책이 2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과 적절한 교육이 각각 19.3%, 새로운 어업개발 18.3%,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4.6%, 기타(중국어선 단속, 어장확대, 직접실험 후 정책수립, 남획금지 등)의 순으로 불법어업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설문에 의한 해양경찰관의 불법어업에 대한 의견으로는 연근해 어선이 전반적으로 불법어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8.0%), 불법어업을 하게 된 동기는 생계유지를 위해서(83.5%), 불법어업으로 어족고갈(68.9%) 등으로 나타났다. 불법어업 근절 대책으로는 현행법 및 제도개선(68.4%)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 참고 문헌

- 김일평, 공무 국외여행 귀국 보고서. 일본의 해상범죄 대비책과 이를 위한 국가간 협력 방안(총무처 주관 한일 공무원 상호교류), 1994.
- 유정규, 근절되어야 할 불법 어법. 현대해양(90.2), pp.30~34, 1990.

이상조, 김진건, 한국 연근해 불법어업의 지도 단속 실태, 수산해양교육연구, 10권 제 2호, pp.139~159, 1998.

이정열, 전북수산의 현황과 바다산업육성방안, 수산과학연구 제15호, pp.59~75, 1999.

이태희, 수산청 어업지도선의 불법어업 단속에 관한 연구, 수산청, pp.1~76, 1996.

전라북도, 어업질서 확립대책, pp.1~10, 2003.

최종화, 정도훈, 차철표, 우리나라 연근해 불법어업의 유형별 발생원인과 어업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수산교육연구 14권 제2호, pp.191~212, 2002.

해양수산부, 불법어선 단속 통계, 해양수산부 어업 지도과, 1996~2002.

해양경찰청, 불법어업의 단속실적 통계, 1998~2002.